

예 산 총 칙

2010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73,272,909	5,198,187
일반회계	167,864,525	5,035,936
특별회계	5,408,384	162,252
기타특별회계	5,408,384	162,252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427,101	12,813
지하수관리 특별회계	560,510	16,815
기반시설 특별회계	9,725	292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	393,460	11,804
주차장특별회계	4,017,588	120,528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819,845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